간호인력 차등제 관련

Q. 요양병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나, 직급간호사(감독, 부장, 과장 등)의 경우 간호인력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요양병원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하며,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간호과장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근무자와 분만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간호사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만 전담하는 경우에는 간호인력으로 산정 가능하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타 업무와 겸하여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험급여과-389호 (2010.02.05.)

요양병원의 비정규직 간호인력 산정기준

Q. 요양병원의 임시직 간호인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간호인력중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등) 산정기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0(이상) 30시간(미만)인 경우 0.4인, 30(이상) 40시간(미만)근무자는 0.6인, 40시간(이상)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제 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인, 0.7인, 0.9인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직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50입니다. 임시직 간호조무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 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2. 근로시간un라게에 관한 사항
- 3. 임금의 구성항목ů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4. 휴일un휴가에 관한 사항
-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 Q. 임시직 간호사가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개월 근무를 채우지 못한 경우 간호인력으로 산정 가능한 가요?

임시직 간호사(시간제, 계약직 등)가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이 안되는 경우라도 간호관리료 산정대상 간호사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